##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42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 강득구·서삼석·김영호

송재봉・한병도・윤호중

한민수 · 백승아 · 이학영

김준혁 • 민병덕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에 대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.

그런데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교육공무원법」과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

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

11의3.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의2(회원자격) ① (생 략)	제7조의2(회원자격) ① (현행과		
	같음)		
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	②		
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			
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
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			
할 수 있다.	,	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<u>11의2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2</u>		
	조에 따른 기간제교원		
<u>&lt;신 설&gt;</u>	11의3.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		
	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		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